

목 차

내규 863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예규
 865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879

인사 885

공고 892

●내 규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대법원내규 제496호 2018. 6. 14.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이하 "전원합의기일"이라 한다)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그 합의기일의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수 있다.

- ②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1항의 전원합의기일 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이하 "부"라고 한다)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제1항에 따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한다.
- ④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1항에 따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⑤ 대법관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대법원장 및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쟁점 등을 전원합의체에 보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합의기일이 지정된 사건(이하 "전원합의사건" 이라고 한다)은 간략한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전원합의체 심리) ①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한하여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이 된다.

② 제2조제5항에 의하여 보고된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③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에서 심리한다.

제4조(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항) 전원합의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재판은 주심대법관의 소속 부에서 할 수 있다.

- 1. 「형사소송규칙」제162조가 정한 사항(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및 그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그 취소)
- 2. 국선변호인, 통역인, 번역인의 선정
- 3. 강제집행의 정지
- 4. 송달에 관한 결정 또는 명령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제5조(전원합의사건 등 관리) ①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전원합의체의 전원 합의사건, 변론사건, 선고사건 등의 목록을 작성한다.

- ②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는 그 심리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기일의 지정 등) ①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다만, 해당 일이 15일인 경우에는 22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날짜는 미리 정하여 공개한다. 변경된 때에도 같다.

제7조(기일의 준비 등) ①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1회 이상 제2조에 따른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한다.

- ② 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 조사 · 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한다.
- ③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정하여진 절차, 기일 등 추후 진행사항에 따라 재판연구관은 해당 기일에 맞추어 후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판결의 선고 등) ① 재판장은 선고기일에서 재판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대법관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그 의견의 요지를 밝힐 수 있다.

② 전원합의체 선고에 관한 동영상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재판서는 선고 직후 공개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예 규

◎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51호 2018. 6. 15. 결재)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은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법부구성원이"를 "사법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법원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4. "법원 외 직원"이라 함은 사법부 구성원 외에 법원의 재판업무, 등기, 가족관계 또는 사업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이용방법 및 범위 등)"을 "(이용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가상화"를 각각 "업무가상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재판사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
- 2.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시스템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은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이용 범위는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이용 절차 등)"을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사법부 구성원 중"을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 중"으로, "가상화"를 "업무가상화"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를 "법원 업무 가상PC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상화"를 "업무가상화"로,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상화"를 각각 "업무가상화"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제4항 및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가상화"를 각각 "업무가상화 및 인터넷가상화"로 한다.

6

제5조(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법부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전산정보관리국)에 별지 제 3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 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전 산정보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인 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용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제4조 관련)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O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O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11 18	TEOTIL TEOTETE XIITI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폰)		
부서			
신청구분	ㅁ 가상PC 개인 계정 ㅁ 가상PC 공용 계정		
사용구분	□ 법관업무 □ 행정 업무결재 □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 외부 스마트워크센터 □ 재판사무시스템 지원 □ 해외연수/파견 □ 기타()		
사용기간	ㅁ 20 ~ 20 ㅁ 재직기간		
OTP 발급	□ OTP 신규발급 □ OTP 재발급(OTP 발급 후 기기 변경된 경우)		
기타			

【별지 제2호 서식】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제4조 관련)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O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O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 신청을 위하여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1116-1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폰)
부서	
가상PC명(VM)	
신청구분	ㅁ 가상PC 개인 계정 ㅁ 가상PC 공용 계정
사용구분	□ 법관업무 □ 행정 업무결재 □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 외부 스마트워크센터 □ 재판사무시스템 지원 □ 해외연수/파견 □ 기타()
해지사유	□ 퇴직 □ 사무분담 변경 □ 인사이동 □ 기타()
OTP 발급	□ OTP 신규발급 □ OTP 재발급(OTP 발급 후 기기 변경된 경우)
해지일자	□ 20
기타	

【별지 제3호 서식】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제5조 관련)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부서 또는 사용 장소, 소속사, 계약사
- O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부서 또는 사용 장소, 소속사, 계약사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O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19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						
부서 또는 사용장소								
사용기간*	20 부터 20 까지							
신청사유								
소속사		계약사						
신청일	20	근무종료일	20					
소명자료**	별첨(사용기간 및 신청사유)							

^{*}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계약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제5조 관련)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인터넷 가상PC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또는 사용 장소, 소속사. 계약사
- O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또는 사용 장소, 소속사, 계약사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 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19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		
부서 또는 사용장소					
사용기간	20 부터 20 까지				
해지사유					
소속사		계약사			
신청일	20	근무종료일	20		
소명자료	별첨(삭제사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u>사법부 구성원이</u>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 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생 략)
- 2. "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가상화 컴 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산정보처 리 조직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이용방법 및 범위 등) ① 사법부 구성 원은 법원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u>가상화</u>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사법부 정보시스템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안
제1조(목적) <u>사법부</u>
제2조(용어의 정의)
1. (현행과 같음)
2.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
부가 운용하는 서버기반 컴퓨팅 방식으
로 법원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u>는 시스템을 말한다.</u>
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라 함은
<u>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u>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
<u>스템을 말한다.</u>
4. "법원 외 직원"이라 함은 사법부 구성원 외에 법원의 재판 업무, 등기, 가족관계
<u> 되에 입천의 세원 입구, 증기, 기속된게</u> 또는 사업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 범위 등) 〈삭 제〉
② <u>업무가상화</u>

12

혀 했

- 1.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 지원시스 템. 전자소송시스템 등 재판업무 시스템
- 2. 그룹웨어, 전자결재, 복무관리, 종합법 률정보시스템, 나의 인사 정보 등 사법 행정 업무시스템
- 3. 그 밖에 <u>가상화</u>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보시스템과 그에 부수하는 업무용 프로그램

〈신 설〉

③ (생 략)

제4조(이용 절차 등) ① 사법부 구성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 행정처(소관: 전산정보관리국)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 조정실, 민원열람실 등의 장소에서 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가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생략)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u>가상화</u>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u>제3조 제3항</u>에 따라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 정 안

1 재판사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 2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시스템 3. ----- 업무가상화-----③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은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이용 범위는 「업무 외 인 터넷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 중 -------- 업무가상화----------- 법원 업무 가상PC 신청서 -----------② (현행과 같음) -----· 업무가상<u>화</u> ---------- 제3조제4항 -----

현 행

- ④ 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 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해지신청서를 법 원행정처(소관 : 전산정보관리국)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 이디를 <u>가상화</u>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u>가상화</u> 전산시 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신 설〉

4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5)	
	<u>업무가상화</u>
	<u>업무가상화</u>

정

아

개

제5조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법부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 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 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 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전산정 보관리국)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원 인 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제4항에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4

현 행

<u>제5조(보안준수의무 등) ① ~ ③</u>

(생 략)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u>가상화</u> 전산시스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사법부 내의 <u>가상화</u>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전산처리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 정 안

- ④ 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 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를 법원행정처(소관: 전산정보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 이디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 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인터넷가 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underline{M6}\underline{x}$ (보안준수의무 등) ① \sim ③	
(현행과 같음)	
(4)	

<u>업무가상화</u>
<u>및 인터넷가상화</u>
··
<u>제7조(</u> 운영 및 관리)
업무가상화와 인터넷가상화

혀 행

[별지 제1호 서식]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 소속 직위(직급)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코트넷 아이디 부 서 또는 사무분담 신청구분 ㅁ 개인 아이디 ㅁ 공용 아이디 ㅁ 전자소송 업무 수행 신청사유 □ 현장검증 업무 필요 ㅁ 기타()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 청서(제4조 관련)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 등
- 의 업무처리 시 이용 수집 및 이용 항목 :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 트넷 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O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 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O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 리가 있으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 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 하지 않음 ㅁ)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폰)		
부서			
신청구분	□ 가상PC 개인 계정 □ 가상PC 공용 계정		
사용구분	□ 법관업무 □ 행정 업무결재 □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 외부 스마트워크센터 □ 재판사무시스템 지원 □ 해외연수/파견 □ 기타()		
사용기간	□ 20 ~ 20 □ 재직기간		
OTP 발급	□ OTP 신규발급 □ OTP 재발급(OTP 발급 후 기기 변경된 경우)		
기타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16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해지신청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해지신청서					
소속		직위(직급)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코트넷 아이디					
부 서 또는 사무분담					
아이디 및 구분	([그 개인아이디 - 1	고 공용아이디)		
해지사유	- 퇴직 - - 기타(사무분담 변경	ㅁ 업무 종료)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 지신청서(제4조 관련)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 등 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 넷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으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 신청을 위하여 동의 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 지 않음 □)

법원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폰)			
부서				
가상PC 명(VM)				
신청구분	ㅁ 가상PC 개인 계정 ㅁ 가상PC 공용 계정			
사용구분	□ 법관업무 □ 행정 업무결재 □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 외부 스마트워크센터 □ 재판사무시스템 지원 □ 해외연수/파견 □ 기타() □ 퇴직 □ 사무분담 변경 □ 인사이동 □ 기타() □ OTP 신규발급 □ OTP 재발급(OTP 발급 후 기기 변경된 경우)			
해지사유				
OTP 발급				
해지일자	□ 20			
기타				

혀 행

〈신설〉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 신청서(제5조 관련)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 등
- 의 업무처리 시 이용 수집 및 이용 항목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 화번호(휴대폰), 이메일, 부서 또는 사용장소, 소속사, 계약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 일,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부서 또는 사용 장소, 소속사,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으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 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 지 않음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19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	
부서 또는 사용장소	20 부터 20 까지					
사용기간						
신청사유						
소속사				계약사		
신청일	20			근무종료일	20	
소명자료 **	별첨(사용기간 및 신청사유)					

^{*}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함

^{**} 계약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음

혀 행

〈신 설〉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 해지신청서(제5조 관련)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인터넷 가상PC 등의 업무 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또는 사용 장소,소속사, 계약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 일,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또는 사용 장소, 소속사, 계약사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으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 신청을 위해 동의 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 지 않음 □)

근무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19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
부서 또는 사용장소			
사용기간	20	. 부터 20 .	까지
해지사유			
소속사		계약사	
신청일	20	근무종료일	20
소명자료	별첨(삭제사유)		

신법령 목록 (2018. 6. 1. ~ 6.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				
법률제1562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2018. 6. 12	19274	6
법률제15626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5627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5629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15630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563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15632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	"	14
법률제15633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5634호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	"	"	16
법률제15635호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	"	"	17
법률제1563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156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15638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1563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15640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	24
법률제15641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1564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15643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1564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1564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564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1564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0

제 1547호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79호

법률제1568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2018. 6. 12	19274	119
법률제1568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20
법률제15682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21
법률제1568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21
법률제15684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	"	132
법률제15685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	132
법률제15686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33
법률제1568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	134
법률제15688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0
법률제1568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41
법률제1569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42
법률제15691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43
법률제15692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5
법률제1569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148
법률제1569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9
법률제1569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9
법률제15696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52
법률제15697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4
법률제1569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55
법률제15699호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7
법률제1570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8
법률제1570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8
법률제1570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159
법률제1570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0
법률제1570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0
법률제15705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61
법률제1570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2
법률제1570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63
법률제15708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65
법률제1570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	"	166
법률제15710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	"	"	168

법률제15711호 법률제15712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8. 6. 12	19274	171 173
【조약】				
조약제2387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2018. 6. 5	19270	4
조약제2388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 조를 위한 기본협정	2018. 6. 15	19276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93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6. 5	19270	9
대통령령제28931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93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9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893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893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8936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28937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893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28939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289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894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894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894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30
대통령령제2894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8945호	보혐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 정 등 19개 대통령령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28949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령	2018. 6. 12	19274	174
대통령령제2895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	"	175

레트러러케OOAF1중	키크가축 드세 코취 버르 기체러 이탈케건터	0010 6 10	10074	1770
대통령령제2895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6. 12	19274	176
대통령령제2895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0
대통령령제2895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1
대통령령제2895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	"	183
대통령령제28955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5
대통령령제289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85
대통령령제28957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	"	186
대통령령제28958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3
대통령령제28959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4
대통령령제28960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6
대통령령제28961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i>"</i>	"	196
대통령령제2896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i>II</i>	"	198
대통령령제28963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i>"</i>	"	204
대통령령제2896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i>"</i>	"	205
대통령령제28965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6
대통령령제28966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9
대통령령제2896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i>"</i>	"	212
대통령령제2896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213
대통령령제2896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i>"</i>	"	214
대통령령제28970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4
【총리령】				
총리령제146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14	19275	4
[부령]				
국토교통부령제516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1	19268	4
국토교통부령제517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7
국토교통부령제518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4	19269	4

환경부령제7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5	19270	38
국토교통부령제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i>"</i>	//	40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8. 6. 7	19271	4
국방부령제96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11	19273	4
여성가족부령제12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기획재정부령제681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12	19274	216
법무부령제93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1
법무부령제93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i>"</i>	"	267
문화체육관광부령제32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276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	"	280
보건복지부령제57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285
환경부령제763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4
환경부령제765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98
여성가족부령제123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2
여성가족부령제124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3
여성가족부령제12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7
국토교통부령제52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9
국토교통부령제523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0
문화체육관광부령제32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14	19275	11
환경부령제76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6
환경부령제767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17
여성가족부령제12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
해양수산부령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정정	"	"	36
국토교통부령제5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15	19276	12

으인 사

인사발령 법 제98호

2018. 5. 1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姜玟求)	2018. 5. 21.부터 2018. 6.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천(金滎川)	"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曺羊希)	2018. 5. 28.부터 2018. 6.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영길(安英吉)	2018. 5. 28.부터 2018. 6. 2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99호

2018. 5.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징 계 가. 지	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삼윤(李三潤)	법관징계법 제26조 제1항,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간 감봉

(보수의 1/3 감액)에 처함

(2018. 5. 1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1호

2018, 5,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박병칠(朴炳七) 2018. 5. 20.부터 2018. 6. 1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8. 5. 29.

(2018. 6. 21.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1_		
가. 지	방법원 판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최지영(崔智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8. 6. 11.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주대성(朱大聖)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2018. 6. 16.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성수(金成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염경호(廉耕昊)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휴직 및 급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	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철(金玟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11.부터
			2019. 2. 28.까지 휴직을 명함
	"	남준우(南竣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20.까지 휴직을 명함
	"	정우석(鄭愚錫)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11.부터
			2019. 6. 10.까지 휴직을 명함
	"	최영각(崔寧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11.부터
			2018. 8. 1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기수(韓基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21.부터
			2018. 12. 2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성광(黃成光)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11.부터
			2019. 6. 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창석(徐昌錫)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11.부터
			2018. 8. 1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하상제(河相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11.부터
			2018. 8. 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설아(朴卨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30.부터
			2019. 2. 22.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수웅(李秀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1.부터
	부산지방법원 판사	장병준(張炳俊)	2018. 6. 29.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2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명주(宋明珠)	2018. 6. 30.부터 2019. 1.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태지영(太智瑛)	2018. 6. 30.부터 2018. 11. 26.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3.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정일(金正一)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8. 6. 21.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선말(李善末)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8. 6. 26.자
4. 파견기간 연			
가.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유경(盧柔慶)	2018. 6. 16.부터 2019. 6. 15.까지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8. 5. 2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 가. 지방법 	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리(金美利)	2018. 6. 26.부터 2018. 7.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최병철(崔炳哲)	2018. 6. 22.부터 2018. 7. 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규홍(沈揆弘)	2018. 6. 3.부터 2018. 6. 3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윤상도(尹相道)	2018. 6. 4.부터 2018. 6.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8. 5. 31.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박헌행(朴憲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오세용(吳世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정찬우(鄭燦宇)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소병진(蘇秉珍)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박찬석(朴贊錫)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나상훈(羅相勳)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완형(李琓炯)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강민호(姜旻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이종환(李鍾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정병실(鄭炳實)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파사		
1. 10 8 2	청주지방법원 판사	류희상(柳憙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노을(차노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현준(金玄浚)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에 겸임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승현(金承炫)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	양철순(梁喆舜)	и

(2018. 5. 31.자) 끝.

제 1547호

관인 등록 공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0조, 동 시행내규 제56조에 의하여 대 구지방법원의 관인 등록을 별 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14.



[별지 제23호서식]

관 인 대 장

관	인	명	叫大	방법원	佛想	법	丹	401	26							
종		류	□청인	■직인	□ 특수관	간 인		관리	부서		Ľ	내구지	방법	원 총	무과	
		·	(인	영)		등 (재	등	루목	일 일)		20/8	년	6	월 /	f 일	
						새	7	<u>']</u>	날	-	2018	년	6	월 14	일	
□등록						새	긴	사	람						•	
				31일 51만		초	초 /	·	. 일	1	018	년	6	월 /	4 일	
 재 			법원A			재			豆			Ž	희양목			
□ 재 등 록 관 인						등록 사	븎(재	등	록) 유	4	da d	HH!	3.9			
인						법공	원	공	보 고		년 (제		월		일 호)	
						刊			고	本	中华	_	61	63		
			(인	영)		등 (재	능	록록	일 일)		년		월		일	
						폐 (분	7	길	일 일)		년		월		일	
폐						耳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7]						페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관 인						폐 (분	フ	를 	자 자)	소속	수:		성명	3 :		
						법공	원	공	보고		년 (제		월		일 호)	
						刊			고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